

# 平昌郡議會本會議會議錄

第20回平昌郡議會

第 6 號

平昌郡議會事務課

日 時 1993年 12月 20日(月) 午後2時08分

### 議事日程 (第6次 本會議)

1. 1993年度行政事務監查結果報告
2. 平昌郡公有財產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3. 1994年度平昌郡地方債發行計劃同意案
4. 1993年度第3回平昌郡一般會計 및 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
5. 1994年度平昌郡一般會計 및 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6. 休會의件

### 附議된案件

- |   |       |      |
|---|-------|------|
| 1. 報告事項                                   | _____ | 2 面  |
| 2. 1993年度行政事務監查結果報告(行監特委 報告)              | _____ | 2 面  |
| 3. 平昌郡公有財產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平昌郡守提出)              | _____ | 4 面  |
| 4. 1994年度平昌郡地方債發行計劃同意案(平昌郡守提出)            | _____ | 5 面  |
| 5. 1993年度第3回平昌郡一般會計 및 特別會計追加更正豫算案(平昌郡守提出) | _____ | 5 面  |
| 6. 1994年度平昌郡一般會計 및 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平昌郡守提出)    | _____ | 7 面  |
| 7. 休會의件(議長提議)                             | _____ | 10 面 |

(14시08분 개의)

시기 바랍니다.

○ XXXXXXXXXX 좌석을 정돈하여 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redacted] 오늘은 그동안 전  
의원이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94년도  
예산안을 비롯하여 93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과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등 군정의 중요한 안건심의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심도있는 숙의로 모든안건  
이 원만히 처리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  
실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  
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휴회기간중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報告事項

(14시09분)

○ [redacted] 사무과장 권혁승  
입니다.

휴회기간중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니다.

( 보고사항 - 끝에 실음 )

○ [redacted] 사무과장 수고하셨  
습니다.

2. 1993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  
(行監特委 報告)

(14시11분)

○ [redacted] 의사일정 제1항 1993  
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상정합니  
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신 이상훈 의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이상훈 의원입니다.  
1993년도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11월25일 제1차 본회  
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및 기간  
결정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위원  
7인으로 구성되었고 11월26일 제2차 본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12월1일부터 12월3일까지 3일간 평  
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  
례에 의해 감사를 실시 하였으며 감사대  
상기관은 당연대상기관인 평창군의 본청  
및 소속해당기관과 하부 행정기관으로  
하였고 감사반 편성은 행정사무감사특별  
위원회 위원 전원과 사무보조에 전문위  
원 신교선, 의사계장 함경호, 직원  
함인주 , 심명희, 이은하의 보조를 받았  
습니다.

감사일정및 장소는 12월1일 군청회의실  
에서 감사실시 선언을 시작으로 위원장

인사와 기관장인사, 실과소장의 감사 대상사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의 순서로 기획실의 5개실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12월2일은 환경보호과의 5개과에 대하여, 12월3일은 산림과의 3개부서와 3개읍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명시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와 단체 위임사무로 하였습니다.

주요감사내용은 기획실의 군정시책추진 여비 지출내역의 총 92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다음은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시정및 처리요구사항은 군수포괄사업 선정은 다른사업 부대시설등에 집행된 것이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등 31건에 대하여 시정과 처리요구를 하였고, 건의사항은 각종사회단체에 대한 보상금 지원은 그 단체의 자생력을 키워 관에 의지하지 않도록 지원을 줄여나가는것 외에 건의 하였습니다.

항목별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감사의견중 종합의견과 미흡한부분 금후개선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DACTED] 이상훈 위원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계속된 감사에 임하신 분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고를 들은바 있는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소리가 없음)

발언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平昌郡公有財産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 平昌郡守 提出 )

( 14시17분 )

○ [redacted]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재무과장입니다.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공유임야에 관한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현행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제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유임야재산취급에 관한 준용기준인 산림법시행령 제62조를 적용하고 있으나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제5항에 공유임야 대부요율이 산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 제1호의 국유임야대부요율과 같고 동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이 다양한 경우에 각기 다른 요율 적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법적용의 신속성을 기하고자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제5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개정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임야를 대부또는 사용허가 하는경우

에 현행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5항 규정상 고정요율인 100분의 10을 삭제하고 산림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국유임야 대부요율을 준영토록 함으로서 요율체계를 다양화 하는 것입니다.

목축, 조림용은 100분의 1, 공용,공익사업용과 광업용은 100분의 5이며, 광업용중 장래 산림으로 복구치 못할 구역은 임야가격을 대부료로 산정하며 기타 목적의 경우는 100분의 10으로 요율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는 의제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소리가 없음)

발언신청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증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1994年度平昌郡地方債發行計劃同意案 (平昌郡守 提出)

(14시20분)

○ **議長 韓榮**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 평창군지방채발행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趙相** 기획실장입니다. '94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날로 오염되어 가고있는 식수원 보호와 위생적인 양질의 급수를 공급하고 주민보건위생에 기여하기 위하여 계촌상수도 사업에 소요될 부족 재원을 보충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지방채발행동의를 요구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지방채차입계획은 특별회계로서 사업명은 계촌상수도 신설입니다.

기체규모는 3억5,000만원으로 기체선은

건설부 토특 2억과, 강원도 지역개발 기금 1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체종류는 증서차입이 되겠습니다.

발행시기는 94년5월이고 이율은 토특이 5%, 지역개발기금이 7%입니다.

상환기관은 토특이 5년거치 15년 균분상환이고 지역개발기금은 2년거치12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환재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실장 趙相**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는 의제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무소리가 없음 )

발언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994년도 평창군지방채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1993年度第3回平昌郡一般會計및特別

會計追加更正豫算案 (平昌郡守 提出)

(14시23분)

○ [redacted]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3년도 제3회평창군일반회계 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문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redacted] 박문춘 의원입니다. 1993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0회평창군의회정기회 제2차본회의에서 위원7인으로 구성되어 12월14일 평창군으로부터 제출된 1993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14일 제6차회의에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예산안개요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별 예산안을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다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술하게 심사한 결과 금일 오전에

개의된 제8차 회의에서 일부 예산안을 수정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993년도 제3회 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3억 4,900만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일반회계에서 7억500만원, 특별회계에서 6억 4,400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기정예산 대비는 2%가 감소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 특별회계는 6%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중 의회비와 일반행정부 및 기타경비의 원안에 대하여 수정의결하였고 일반회계의 기타부분과 4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는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을 수정없이 의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세출부분의 의회비중 경상사업비의 의회민원조사 정보비 200만원과 내무행정부중 경상사업비의 신강원추진정보비 500만원, 냉해대책추진정보비 500만원을 예산결감으로 삭감하여 지원및 기타경비중 예비비에 1,2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특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낙운~~ ~~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보고를 들은바 있는 의제에 대하  
여 질의나 토론타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소리가 없음)

발언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993년도 제3회 평창군일반회계및 특별  
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  
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부분  
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1994年度平昌郡一般會計및特別會計

歲入歲出豫算案 (平昌郡守 提出)

(14시28분 )

○ ~~김낙운~~ ~~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  
5항 1994년도 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낙운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운~~ 김낙운 의원입니다.  
1994년도 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  
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  
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0회 평창군  
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구성되어 11월26일 평창군수로  
부터 제출된 1994년도 평창군일반회계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12월6일 의장  
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8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예산안개요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를 듣고 소관 예산안을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다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진술하게 심사한 결과 금일 오전에 개의  
된 제8차회의에서 일부 예산안을 수정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994년도 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443억9,200만원,

특별회계가 30억3,900만원으로 총 474억  
3,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가 감소되  
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8%가 증가된 반  
면 특별회계는 72%가 감소된 예산입니  
다.

다음은 당 특위에서 심사의결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일반행정비, 산업  
경제비, 문화및체육비, 지역개발비의  
원안에 대하여는 수정의결 하였고,  
일반회계의 기타 부분과 6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는 평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을 수정없이 의결하였습  
니다.

수정내용은 기획관리비중 예산운영의  
군정수행 유공민간인 보상 2,500만원,  
군정유공민간단체보조 2,500만원,  
공보비중 공보관리의 일간지,군정홍보  
1,100만원, 군민현장비 건립 3,000만원  
내무행정비중 통신관리의 행정정보센터

운영 8,000만원, 산업경제비중 임업비의  
산림관리 산림유급감시원 인건비 2,700  
만원, 문화체육비중 체육진흥의 직장  
체육부 운영 2,560만원을 삭감하고 지역  
현안사업해결을 위하여 지역개발비중  
지역개발에 2억2,360만원을 증액 하였  
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  
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특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낙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여러분 오랜시간 여러날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지금 보고를 들은바 있는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소리가 없음)

평창군의회의 특성상 저를 제외한 의원  
전원이 예결위에 참여 하였습니다.

공통점을 모아서 중지를 모아서 만든  
보고서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나 토론  
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994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부분은 수정  
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94년도 예산안과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결과 관련하여 부군수  
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부군수** 존경하는 한영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  
지난 11월25일 제20회평창군의회 정기회  
가 개원되어 오늘까지 제6차 본회의를  
마치는 동안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92년도 세입세출결산안및 예비비  
심사등의 주요 의안을 처리하여 주셨으  
며 특히 94년도 당초예산안및 수정예산  
안 심의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  
의결해 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  
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이 금년도 한해동인 계획하고 집

행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심도있는 군정  
질문과 행정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하여는 보완이 가능한 사안은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조치하고 개선을  
요하는 사안은 충분한 검토와 연구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계획했던 군정의 모든  
업무에 대하여는 몇일 안남은 연말까지  
알차게 마무리 하고 군정이 추구해야할  
방향과 시책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한  
산하공무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 의원님들께서  
의결 승인해주신 제3회추가경정예산과  
'94당초 예산에 대하여는 정부의 신경제  
정책에 발맞추어 절약 예산집행에 중점  
을 두어 건전재정운영과 지역균형개발  
추진에 주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새해에는 의원 여러분  
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모두 성취  
되시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  
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부군수** 부군수님 고맙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의 의원들의 견해와 의문점은

주민의 의견이며 주민의 뜻이라는 입장에서 군수님을 비롯한 전체 공무원들은 내년도에 충분히 검토되시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보완해 주시고 또 새롭게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금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해복구사업도 아직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 마무리가 될 것을 주민과 함께 기원을 드립니다.

또한 94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 우리 주민의 복지와 이지역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7. 休會의件 (議長提議)

(14시 38분)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간에 사전 합의된 대로 연말 위문활동을 위하여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0회 명창군의회 정기회 제6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 出席議員

- 議 長 韓 榮 一
- 副議長 金 鍾 永
- 議 員 李 致 玉
- 議 員 李 相 薰
- 議 員 朴 容 泰
- 議 員 朱 泰 元
- 議 員 金 樂 雲
- 議 員 郭 文 春

○ 出席公務員

- 副 郡 守 韓 奇 洙
- 農村指導所長 劉 載 國
- 企劃室長 高 昶 植

內務 課長	金榮柱
社會振興 課長	權純喆
財務 課長	李永德
環境保護 課長	金學根
地域經濟 課長	朴榮源
山林 課長	吳興一
建設·都市課長	洪基杓
民防衛 課長	朴俊河
保健事業 課長	任永彬
社會指導 課長	全根鐸

○ 議會事務課

事務 課長	權赫昇
議事 係長	咸京鎬

[ 議 席 ]

○ 議席表 ( 5 面에 실음 )

平昌郡議會 會議規則 第46條의 規定에  
依據 署名捺印함.

1993年 12月 2 / 日

議 長

韓 榮 


議 員

李 敏 

議 員

郭 文 

事務課長

權 赫 

[ 報告事項 ]

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사항

1. 1994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비목설치 동의  
요구

(1993년12월17일 예결특위위원장, 평  
창군이송, 12월18일 평창군수 동의회  
신, 예결특위 회부

2. 1993년도제3회 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  
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

(1993년도 12월 20일 예결특위위원장  
본회의 부의)

3. 1994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심사보고

(1993년 12월 20일 예결특위위원장,본  
회의 부의)

○ 의안제출

1. 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 개  
정조례안 (1993년 12월 15일 평창군  
수 제출, 본회의 부의)

2. 1994년도 평창군지방채발행계획동의  
안 (1994년 12월 18일 평창군수제출,  
본회의 부의)

○ 의원발의

1.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1993년 12월 17일 박용태의원의 6인